

광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1가단552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신광식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873,0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873,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합계 355,336,177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24. 6. 9.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은 총 150,873,034원이다.

1	구매자금대출	2013. 3. 29.	50,000,000원	2021. 4. 4.	60,784,202원
2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2015. 7. 9.	5,336,177원	2021. 11. 12.	6,191,478원
3	일반자금대출	2017. 4. 27.	300,000,000원	2022. 4. 27.	83,897,354원
합계	355,336,177원	150,873,034원			

나. C은 2019. 3. 15.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5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11. 25. 그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9. 5. 10. D을 채무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바, 당시 C의 자산상태를 조사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 A 주식회사의 2023. 8. 7.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0. D을 주채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당시 C에 대하여 보증인 적정 여부 심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하여 연대보증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연대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적극재산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이 사건 부동산과 서귀포시 F 전 9,144㎡, G 도로 416㎡ 중 82/416 지분, H 도로 496㎡ 중 1/2 지분(이하 위 각 서귀포시 부동산을 통틀어 'C의 제주도 부동산'이라고 한다), 광주 동구 I아파트 J호(이하 'C의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였던 사실, C의 제주도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②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던 사실, 2019. 3. 15. 기준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감정인 O의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고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4,000,000원이고 C의 제주도 부동산 시가는 총 4,259,714,000원이며 C의 아파트 시가는 490,000,000원인 사실,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31,780,821원(= 원금 500,000,000원 + 대여일인 2018. 7. 27.부터 2019. 3. 15.까지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31,780,8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C의 제주도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그 시가 총액에서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은 3,527,933,179원(= C의 제주도 부동산 시가 합계 4,259,714,000원 -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731,780,821원)이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C의

아파트에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시가 상당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으로 주장하고 사해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른 시가 상당액을 적극재산 가액으로 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적극재산 가액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C의 적극재산은 4,201,933,179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84,000,000원 +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C의 제주도 부동산 가액 3,527,933,179원 + C의 아파트 시가 490,000,000원)이 된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C의 소극재산이 아래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신용보증기금, P, Q, R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따라 인정되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합계 4,240,745,229원이 된다.

1	원고에 대한 채무	2,639,318,597
2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30,750,000
3	P에 대한 채무	170,194,661
4	IBK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74,242,000
5	S에 대한 채무	2,000,000
6	T은행에 대한 채무	129,102,734
7	Q에 대한 채무	80,644,037
8	U은행에 대한 채무	338,000,000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27,560,000
10	V에 대한 채무	9,399,900
11	E은행에 대한 채무	30,000,000
12	R에 대한 채무	9,533,300
합계	4,240,745,229	

3) 소결 이를 종합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무자력이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C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4) 사해의사 관련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인 D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연대보증인인 C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6. 9. 기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잔액이 합계 150,873,034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감정 결과, E은행의 2023. 3. 20.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67,951,343원(=2022. 11. 1. 기준 시가 198,0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048,657원), 피고가 취득한 이익액도 이와 같다]보다 적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150,873,0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873,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훈

별지